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24.

발의자 : 위성곤 · 신창현 · 이찬열

윤영일 · 황주홍 · 홍문표

김현권 · 어기구 · 황영철
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동 우선구매 조항은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,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,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

는 것임(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).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”을 “생산·제공 또는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	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<u>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생산·제공 또는 수행하는 물품·용역 및 공사</u> 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<u>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</u>
④ • ⑤ (생 략)	④ • ⑤ (현행과 같음)